

『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시행계획 수립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라.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3조)

마. 우수사례 발굴 및 준용 규정(안 제14조~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,
 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 - 주요 내용으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,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음.
 - 그동안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가 추진해 온 공영농장과 도시텃밭,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도시농업 시책을 조례로써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